

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17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보건사업과장)

-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에게 『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』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, 논문제출 및 심사 등이 형식적임에 따라 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근무실태 및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함
- 지급대상(안 제2조)
 - 공중보건의사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
- 지급의 한도(안 제4조)
 - 임상연구비는 과제 1건당 300만원이내
 -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
- 진료활동장려금 가산지급 규정(안 제5조)
 - 장려금 지급 시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에 따라 가산지급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 의사에게 지급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절차 및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 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는 대신 진료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
 - 임상연구비는 과제 1건당 300만원 이내, 진료활동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지급토록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 활동 장려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